

---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05년 6월 9일 (목요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정립회관 강당 (광진구 구의동 소재)
- 주관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 주최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구조**

## **마련을 위한 토론회**

---

- 일시 : 2005년 6월 9일 (목요일) 늦은 2시 ~ 5시
- 장소 : 정립회관 강당 (광진구 구의동 소재)
- 주관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 주최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

### 토론회 순서

시 간	내 용
2:00 ~ 2:10	<사회>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참석자 소개
2:10 ~ 3:00 (약 50분)	<주제발제> 사회복지시설과 민주화 : 남구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시례발표> 에바다 정상화 / 민주화 투쟁과 이후 변화시례 : 이승현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
3:00 ~ 3:50 (각 10분씩)	<토론> 박경석 (시설민주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순호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최진영 (정립회관민주화공대위) 이민종 (법무법인해마루 변호사, 민주노동당) 관련공무원
3:50 ~ 5: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자료집 목차

- ▶ 주제발제문 --- 3쪽
  - 사회복지시설과 민주화
- ▶ 사례발표 --- 10쪽
  - 에바다 정상화 / 민주화 투쟁과 이후 변화사례
- ▶ 토론문 --- 16쪽
  - 청암재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공공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인가?)
- ▶ 투쟁소감 --- 22쪽
- ▶ 정립회관민주화투쟁 경과보고 --- 24쪽

## 주제발제

사회복지시설과 민주화<sup>1)</sup>

남구현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 서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민주주의’ 또는 ‘민주화’라는 말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 지향해야 할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민주화는 이루어졌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민주주의의 실질은 어떤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질문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지난 시절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는 갖추어져 있어서, 민주주의 보다는 ‘민생’이나 ‘개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화’ 운동 세대는 70. 80년대의 세대를 일컫는 용어이다. 87년 이래 대중적으로 성장한 민주노조운동만 보더라도 노조합법화가 아직 남아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 개악이나 노조 지도부의 비리, 관료화 등 최근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차원의 쟁점이 형성되고 있다. ‘민주화’는 과거의 언어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근대적인 운영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민주화’가 요구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현장이 그러하다.

무려 7년을 끌며 치열하게 계속되었던 에바다에서의 비리척결,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서 구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고 투쟁을 통해 구성된 민주 이사회가 실질적 운영권을 확보한 것이 불과 2년 전인 2003년 6월의 일이며, 그로부터 1년 후인 2004년 6월에는 한국 최초의장애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을 탄압하는 등 비민주적 운영을 계속하다가, 급기야 정년에 임박하자 불법적으로 임기를 연장하여 운영권을 유지하려던 관장에 맞서 그의 퇴진과 정립회관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이용자와 노동자의 연대를

1) 이글은 한신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노동정책 및 사회정책 전공 학생들인 이승현, 권미진, 손현희, 김미연 등이 함께 참여하여 토론하고 작성하였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무려 9개월간 회관 이용자인 장애인들과 현장 노동자들의 연대를 바탕으로 ‘점거 농성’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연대하기도 하였다. 정립회관 투쟁은 비록 완전한 관장 퇴진을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점거 투쟁을 통해 노동자와 이용자가 시설 운영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며 부분적 승리를 얻어내고 일단락되었다. 이후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공대위’는 시설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민주화 요구는 비단 이 두개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철원지역에 위치한 성남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운영법인의 비리를 폭로하며 노동조합을 결성,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고, 올해 초부터 대구의 청암 복지재단에서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운영법인의 인권유린, 강제노역과 비민주적 운영 사례가 노동조합을 통해 폭로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과 공대위의 투쟁이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현장에서의 시설 민주화 투쟁 요구를 모아 전국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지난 2005년 4월 20일에는 각각의 현장 투쟁주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연대회의’가 결성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글은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향한 요구들에 대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란 과연 무엇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와 원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즉, 각종 비리나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주체성에 대한 부정과 소외, 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은 결코 아니다. 지금까지의 투쟁들 -에바다에서 청암에 이르는- 이전에도 분명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사회의 부조리를 폭로하는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였고, 그로 인해 세상을 깜짝 놀라도록 자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도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늘 잊혀지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그것이 잊혀지면 문제를 일으킨 주범들은 어느새 기득권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로 복귀하는 것이 상례였다.<sup>2)</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선 과

2) 에바다 이전에 언론을 통해 세상을 경악하게 하고 어느 순간 사라진 사례로는 양지마을, 성지원, 형제원 등의 사례가 있다. 이와 함께 2년 전 비리가 폭로되었다가 다시 잠잠해진 꽃동네 비리사건 역시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이승현, 에바다 민주화 투쟁보고서, 진보평론 17호, )

연 그 문제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떤 원인으로부터 비롯되는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시설비리’라는 문제가 있다. 시설비리가 ‘회계부정을 통한 횡령과 착복’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국고 보조금의 횡령, 기부금의 횡령, 재활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착복 등을 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도 다양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시설 생활인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지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고 이를 횡령하는 방법 -에바다의 경우 이를 위해 농아원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 받는 등의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운영자와 가까운 친·인척들의 명의를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인건비를 지급받아 횡령하는 방법(유령직원), 사망자를 사망신고 하지 않은 채 계속 명부에 올려놓고 그에 대한 지원금, 후원금을 계속 착복하는 방법, 후원물품이나 기부금품을 빼돌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방법, 재활작업장이란 명분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차려 놓고 생활인들을 일하게 하고 그 수익과 인건비를 모두 착복하는 방법 등, 아예 개인의 목장, 축사 등에서 생활인들에게 강제로 노역하게 하고 그 수익을 모두 착복하는 방법 등 그 방법이나 형태도 무척이나 다양하다.

다음으로 ‘인권유린’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시설비리와 동떨어져 발생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설비리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다. 어떤 반대급부도 없는 강제 노역은 그 자체로 인권유린일 뿐만 아니라 이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다. 뿐만 아니라 생활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물품과 지원금이 중간에서 착복되어지면서 시설 생활인들을 의/식/주의 모든 기초생활 영역에서 인간 이하의 생활조건에서 생활하게 하는가 하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의문사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이다. 앞의 두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 운영방식의 문제는 앞의 두 문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자 원인이다. 앞의 두 문제가 주로 생활시설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이 시설 운영의 비민주적 운영방식의 문제는 시설의 유형을 떠나 거의 모든 시설에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곧 운영자 또는 운영법인에 의해 시설 자체가 마치 사적 소유물처럼 인정되고, 그에 따라 이용자, 노동자, 지역사회가 실질적 운영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오우너)가 없으면 기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이사장이나 기관장 등 내부 권력을 장악한 자가 소유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사례가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시설의 운영위원회는 그저 형식상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들의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해결은 그 해법을 미리 제시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은 역사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구조 변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빈곤에 대한 적극적 대응 정책의 부재와 함께 이들 한국 사회복지시설들이 발생하여 자리 잡아 온 과정 즉, 역사적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이 출현하게 된 것은 불과 수십년 전인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설립되고 1969년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함으로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전쟁으로 인해 모든 산업의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빈곤이 만연해 있던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사회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었으나, 독재 정권과 부정부패와 몰락, 혁명과 쿠데타 등 온갖 정치적 격변 속에서 당시의 소위 국가권력의 지도층은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어떠한 대책 마련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한국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기간동안 빈곤에 대한 사회적 대응은 해외의 원조와 종교적, 인도적 차원의 구호활동과 같이 ‘사적 영역’에 포함되는 개별적 주체들-특히 선교나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의 자발적 활동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회복지의 기획과 조직, 전달 과정’ 즉 빈곤에 대한 대응에서 이들 종교집단, 자선 단체들과 같은 특수한 목적과 지향을 가진 개별 주체들로 하여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이들의 활동은 196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이라는 형태로 제도화 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그 하부의 각종 법률들을 제정하는 입법 활동과 기본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수행을 통해 이들의 활동을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문제의 첫 번째 근원이 놓여져 있다. 이는 특정한 종교적 신앙, 인도적 관념 -즉 선의-을 중심으로 조직된 집단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과 전달 체계의 독점’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독점은 시설운영의 측면에 있어서는 종교적 관계 또는 혈연적 관계에 중심을 둔 ‘배타적이고 전근대적인 운영방식’이라는

문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직원과 이용자, 생활인 등에 대한 특정 종교에 대한 강요, 인사처분에 있어서 종교적, 혈연적 잣대의 적용 등을 물론이고, 노동기본권과 이용자나 생활인의 권리자로서의 주체성이 부정당하고, ‘시혜와 동정’과 같은 온갖 억압적 이데올로기적 억압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독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의 요구와 시설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영역의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 등을 차단해버림으로서 시설을 사회로부터 사실상 격리시키고 온갖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되게 함은 물론이고, 결국 복지에 대한 사회의 보편적 요구와 시설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간의 현실적 괴리를 유발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국가로 표현되는 공권력의 역할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애초부터 빈곤에 대한 공적 구호책임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특정집단이 주도하는 구호에 대한 보조적 역할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측면과 다른 한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계-즉, 시설 운영에 관한 특정 집단의 기득권이 독점된 체계-는 유지한 상태에서 국가는 점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출의 영역을 넓혀감으로서 현재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전액을 국가의 지원금을 통해 충당하게 되는 이중적이면서도 상충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이중적이면서도 상충되는 구조는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빈곤의 문제에 대한 공권력의 담지자로서 국가의 책임이 사적영역에서의 개별적 활동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설정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동시에 국가 정책의 내부순위에서도 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정책은 후순위의 부차적인 것으로 설정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공되는 구호와 서비스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공적구호, 공적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사적 구호, 사적 서비스인양 왜곡되어 비추어지도록 함으로서 시설의 사유화가 야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보조금의 제공과 집행을 둘러싸고 시설의 소유자들과 지역 정치인 사이에 결탁구조가 생기고, 동시에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전반에 걸친 제반 문제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짐으로서 시설비리 등의 문제들을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로 발전하였다.

세 번째로 정치권력에 의한 자기 미화, 또는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가 또한 결부된다. 이는 작게는 지역의 정치권력, 또는 특정시기의 정권등이 자신들의 비리, 부당함을 감추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냉전국면에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됨으로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리, 폐쇄성, 인권유린 등 온갖 부조리한 모습들을 은폐시켜버린다.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들은 사회복지시설이 한국 사회에 자리잡는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의 원인이 되어 왔으며, 이는 결코 시설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생활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형태의 사회복지시설에 공통되는 문제로 굳어져 왔다.

### 3. 시설 민주화를 위하여

여기서는 시설 운영의 민주화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화는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문제의 핵심적 근원이라 할 수 있는 ‘특정집단에 의한 사회복지의 기획과 전달체계의 독점’에 대한 해소를 의미한다. 이는 각각의 시설내부에 존재하는 이용자, 노동자 등 내부 주체의 운영에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며, 동시에 그 시설이 존재하는 지역과 해당 목적사업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사회복지의 기획과 전달체계 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운영 주체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기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권을 특정 집단이 그들의 이해와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를 기획하고 그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해당영역의 요구와 이용자 또는 생활자들의 필요에 따라 사회복지의 기획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획과 전달을 담당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주체적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형태로 각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강제) 시스템의 확보를 또한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 국가 또는 특정한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 제공하고, 그 필요에 상응한 만큼의 관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해당영역의 개입과 활동을 통해 공권력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강제해 낼 수 있는 구조의 형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시민사회로의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온정주의를 넘어서서 혐오시설을 지양하고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복지 공동체’의 일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첫째, 현장 주체들의 조직과 그에 의한 현장 투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은 각각의 현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내기 위한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동시에 지속

적으로 민주화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발굴과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또한 이러한 현장 투쟁과 주체 조직화의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사회복지의 기획과 제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시설의 문제가 비리의 문제이든, 인권유린의 문제이든, 비민주적 시설운영의 문제이든 간에 그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자, 노조 등이 조직되어 현장 투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지역과 부문의 연대, 즉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결합을 조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공대위, 연대 회의 등 투쟁을 지원하고 염호하는 ‘연대틀’의 형성이 그러한 노력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한편에서는 각각 개별 시설의 문제를 하나의 전국적 흐름으로 만들어 내고 제도적 개선을 추동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함께 함으로서 지역, 영역의 요구를 그에 반영하고, 또한 공권력에 대해 대응하고, 본연의 역할을 강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역시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투쟁과정에 형성된 현장주체와 지역, 부문의 연대체는 투쟁의 결과 민주화된 시설의 운영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비리 및 시설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시설의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성장한 주체 역량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다. 투쟁주체는 운영주체로 발전해 나간다. 물론 이는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다. 우리가 협소한 당사자주의나 투쟁주체 내부에서 투쟁의 성과를 재사유화, 개인화하려는 경향과의 투쟁에서 경험하였듯이, 지속되는 투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례 발표

## 에바다 정상화 / 민주화 투쟁과 이후 변화사례

이승현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

### 1. 에바다에서의 투쟁개괄

에바다에서의 문제가 최초로 폭로된 것은 ‘대통령 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농아학생이 당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농아학생들과 이들의 양심적 스승이던 에바다 학교 몇몇 교사들은 농아원 기숙사 한 구석에서, 한국 농아인 협회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다가 2003년 6월 구 재단 세력의 완전한 축출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해아래집에서 농성과 생활을 함께 해 나가기로 이른다.

에바다에서의 문제는 구 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비리 세력의 일부가 사법처리 되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최성창이 1997년 3월 이사장에서 사임하면서 해결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상황은 그렇게 간단히 마무리 되지 않았다. 최성창은 공식적으로 이사장직을 물러나기 전까지 비리를 폭로하고 농성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고, 이는 그의 후임으로 이사장에 취임한, 최성창을 지지하는, 새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와 함께 사법 처리 되는 듯 하였던 비리 주범들은 하나 둘씩 풀려나기 시작했으며 어느 새 자신들의 기득권 수복까지도 시도하는 상황이 되었다. 장기화로 가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투쟁을 주도하던 이들에게 두 가지 필요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하나는 이사회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새로운 이사회의 구성, 적어도 민주화와 비리 척결을 수용할 수 있는 이사회의 구성이 없이는 보복과 탄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민주 이사회의 구

성 필요가 제기 되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더 많은 투쟁주체들의 역량을 모아내는 것, 즉 자신들의 힘만으로 투쟁을 계속한다는 것은, 상대가 시설 운영의 전권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따라서 더 많은 역량들을 결집해 낼 필요가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사실 1997년 8월 결성된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의 구성을 통해 증명된다. '에바다 비리재단 퇴진'이라는 공대위의 명칭 앞에 붙는 구호는 투쟁주체들의 요구가 비리 세력의 퇴진과 새로운 운영주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대위의 구성은 에바다라는 사안이 지역의 사안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단지 공대위의 구성만으로 에바다라는 사안이 평택 지역의 사안으로 떠오를 수는 없었다. 에바다의 경우 아주 다행스럽게도(?) 비리세력과 당시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긴밀한 비리의 사슬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에바다에 대한 관공서의 대응으로부터 수없이 발견되는 것이었다. 이것이야 말로 에바다라는 사안을 단지 하나의 시설비리 사례를 넘어 지역의 정치적인 이슈-지역사회 기득권 세력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요구하는-로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주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이제 초기의 투쟁주체로서 농아원생과 교사들과 함께 공대위를 통해 새로운 주체로 투쟁에 합류하게 된 지역의 노동자, 진보/민주세력들은 구 재단의 비리 폭로와 그들과 공공기관 관료들간의 아주 끈끈한 비리 사슬을 폭로함으로서 에바다 투쟁을 지역의 민주적 발전에 관한 아주 주요한 사례로서 제기하게 된 것이다.

에바다 투쟁은 공대위 구성이 후 다시 한번 새로운 주체를 결합시키게 되는데 공대위 구성이 '지역의 역량 규합'이었다고 한다면, 인권운동과 장애인 운동이라는 사회 운동 영역의 결합이 그것이다. 2000년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전국연대회의'의 결성이 그것인데, 사실 그 결성의 단초는 이미 1997년부터 있어 왔다.

1997년 공대위의 결성과 그 활동이후 에바다 문제가 폭로될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함께 해 왔던, 농아학생, 교사 이외의, 보이지 않는 주체라 할 수 있었던 대학생들의 활동은 1997년12월 '전국 에바다 대학생 연대회의'라는 단체를 구성으로 이어 졌는데, 이들은 주로 '장애인 운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단지 자신들이 에바다 투쟁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회운동 영역에 대한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갔다. 사실 지금 에바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필자가 에바다를 알게 된 경과도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였으며, 이들의 활동은 이후 1997년 7월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를 통해 지

역을 넘어 한국 사회운동의 각 영역, 대표적으로 장애인 운동, 인권운동, 학생운동 등과 같은, 운동주체들의 에바다 투쟁에의 결합을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 끊임없는 투쟁의 재생산과 확장은 에바다 문제가 그 이전 사례들과 같이 대충 덮어버릴 수 없는 상태로 나가고 있음을 관계당국에 주지시키는데 성공했으며, 결국 1999년 관선이사장 파견이라는 형태의 일정한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물론 에바다 정상화와 민주화는 관선이사장의 파견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선이사장에 의한 구 재단 세력의 등용은 에바다에서의 문제를 또 한번 질곡으로 몰고 갔으며, 현장의 운영권은 여전히 구 재단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이사회의 구성이라는 문제가 가지는 절실히 교사들과 공대위 성원들에게 더욱 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0년 이후부터 에바다 투쟁은 ‘공대위를 비롯한 투쟁주체’들과 ‘시청을 전면에 내세운 구 재단’ 간<sup>3)</sup>의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투쟁으로 국면이 전환되기에 이른다.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투쟁은 2002년까지 계속되었는데 2001년 8월에 공대위로 표현되는 투쟁주체(이하 공대위)들은 이사 3인을 추가 선임하는데 성공함으로서 과반수를 점하게 되었고, 2002년 4월 추가로 2인의 이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서 이사회 내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투쟁에서의 이 같은 승리는 구 재단 세력 내부의 기존 세력으로서 최성창 세력과 관선이사장 이후 실세로 떠오른 양봉애 세력의 알력 다툼에 영향을 받은 이사회 내 구 재단 측 이사들의 분열과 이러한 구 재단 측의 분열을 전술적 차원에서 적절히 활용한 공대위의 이사회 내부투쟁의 성과였다.

이사회 내부 투쟁에서의 승리로 민주적 이사회의 출현을 이끌어낸 공대위는 비리 세력 척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현장 장악을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공대위는 2002년 7월과 2003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온 역량을 집중시킨 현장 진입 투쟁을 통해 당시까지도 농아원과 학교를 점거하고 민주적 이사회에 의한 운영을 거부하던 구 세력을 완전히 축출해 냄으로서 에바다 투쟁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2003년 에바다 진입투쟁의 성공의 의미가 단순한 현장 장악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투쟁의 성공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과 교육청, 경찰과 같은 지역의 공공기관들은 공대위를 운영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시청과 교육청, 경찰과 같은 지역사회의 공공기관들은 이사회의 민주적 재편을 통한 투쟁주체의 운영주체로의 상승을 한사코 부정하려 하였고, 아주 형

3) 사실 2003년 7월까지 에바다 복지회 이사들 중 4인은 평택시에서 임명한 임시이사였는데 그들은 모두가 구 재단을 옹호하는 이들이었다. 이는 결국 평택시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구 재단측을 옹호하고 대변하고자 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식적인 수준에서의, 예를 들면 이사들의 지위에 대한 인정 같은, 인정이 있을 뿐이었고, 현장을 장악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도적인 방해만 계속할 뿐이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진입시도와 성공이라는 투쟁 과정 속에서 이를 공공기관들은 민주 이사회의 실질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운동, 투쟁을 통한 공권력에 대한 강제를 통해서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인정’은 에바다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공대위와 그 투쟁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투쟁 주체를 넘어 운영주체로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상화와 변화된 모습

이제 ‘정상화’를 통해 구 재단 세력을 현장으로부터 완전히 축출하고, 운영주체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립한 투쟁주체들에게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 그것은 ‘민주적 운영을 통한 새로운 모범의 창출’이라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민주적 운영과 새로운 모범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그것의 추진을 위한 많은 하위과제들이 제기 되었는데,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 첫째 재정적 돌파구의 마련, 둘째, 폐폐해진 현장의 복구와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의 예방 및 억제, 셋째, 민주적인 논의구조의 마련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의 온전한 수행을 위해 지금까지 민주 이사회는 갖가지 방식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민주적 운영과 새로운 모범의 창출’이라는 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구 재단 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던 폭압을 제거한 것, 전 근대적인 운영방식을 제거한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현장에서의 변화하는 사례로서 에바다 농아원의 변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에바다 농아원의 경우 진입 당시에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것은 첫째, 농아원은 과거 구 재단 세력들이 농성을 계속한 근거지로서 직원의 대다수가 구 재단에 협력적이었다는 점과 둘째, 직원들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으며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그다지 의욕이 없어 보인다는 점, 셋째 시설의 부실로 인해 끊임없는 보수와 그에 따르는 재정 소요를 야기할 것이라는 점, 넷째 원생의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 감소로 농아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차질과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농아원에 대한 우려는 정상화 이후 2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단지 폭력적인 운영구조를 제거한 것만으로도 현장의 자생이면서도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인으로 바뀌고 있다. 농아원의 경우 현장을 장악한 이후 한 차례의 인사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구 재단 측의 폭압에 적극 협력하면서 민주 이사회를 거부하는 자신들의 ‘투쟁’에 원생들을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이들에 대한 것이었다.

농아원의 변화는 2003년 10월에 있었던 이 인사조치과 신임농아원장의 부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신임 농아원장 부임 초기에만 하더라도 농아원 직원들의 상당수는 새로운 이사회와 그에 의해 선임된 신임 원장에 대해 일종의 불신이 있었으며, 그것은 원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불신은 지난 2년의 과정에서 불만으로서 표출되어 새로운 운영자인 농아원장과 직원들 사이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운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변화 노력은 계속되었고 범인은 가능한 수준에서의 지원을 계속해 나갔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 그 시작은 2003년 언어치료실의 설치로부터였다. 언어치료실의 설치는 직원들이 기존에 맡고 있던 업무 영역에 대한 수정과 언어치료사의 배치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설치과정에 반발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반발은 운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모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2003년 4월 에바다 농아원에 언어치료실이 설치되었고, 이를 담당할 직원에 대해서는 언어치료사 교육을 위한 기회가 보장되었다. 언어치료실이 설치, 운영되면서 무엇보다 농아원생들은 과거와는 달리 농아원-병원-학교 또는 복지관이 연계된 치료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언어치료실의 설치와 그 성과와 함께 최근 농아원에서는 원생들의 사회적 용과 독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재가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와 같이 농아원에서 자라고, 늙고, 죽는 것이 아니라 자라난 원생들의 사회적 용과 독립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이 담당자로부터 제기되고, 이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정신지체가 있는 원생의 경우 농아원에 있는 동안의 훈련, 교육은 물론 독립 이전에 독립된 생활을 체험할 기회의 제공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이 모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농아원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든지, ‘열악한 농아원 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것과 같이 원생과 직원의 처우에 관한 문제의식도 짹트고 있으며, 이를 현실화시켜내기 위한 농아원 자체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 뭔가 특정한 법인 차원의 민주화, 발전적 전망을 위한 체계적이고 현실화된 별도의 조치나 안이 제시되었던 것은 아니다. 법인의 차원에서는 폭넓적인 과거의 구조를 제거한 것, 의욕 있는 운영자를 선임한 것, 그리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재정 등의 필요에 대해 가능한 선에서의 지원을 하였을 뿐이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한 자생적인 흐름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에바다 농아원의 사례는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다시 이러한 자생적 흐름들을 어떤 방식으로 법인 전체 차원의 민주적 운영과 발전적 전망으로 모아 나갈 것인가라는 과제를 법인에 던져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토론문

# 청암재단 사건을 통해 바라본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은 과연 공공시설이 될 수 없는 것인가?)

김순호 (대구경북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

### <청암재단 소개>

청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은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1952년에 설립되어 18세 이상 성인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로 현재 약2백 30여 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직원은 70여 명이며 한 명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장을 겸임을 하고 있다.

청구재활원은 정신지체2,3급의 경증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천혜요양원은 정신지체와 지체장애까지 중복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들이 살고 있다.

### <청암재단사건의 발단배경>

청암재단 노동조합은 청암재단의 전 운영자(이사장, 원장, 사무국장)의 불법운영과 시설생활장애인들의 인권유린, 노동력 착취의 문제로 인해 2004년 12월 19일 청구재활원 홈페이지 게시판과 관할구청인 동구청, 대구시청 게시판에 수십년간 저지를 엄청난 사건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설장애인들의 권리회복과 비리근절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현재는 60여명의 직원중에 구재단 친·인척과 옹호세력을 제외한 32명의 직원들이 노조원으로 구성되어 100여일 넘게 민주이사파견을 위해 동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에 있다.

청암재단 사건은 KBS2 추적60분 2005년3월9일/23일('우리는 재단의 노예였다')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현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복지시스템의 헛점을 노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자행되어지고 있는 시설문제.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 <청암재단의 비리유형 및 실태>

청암재단 비리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생활인 인권유린과 노동력 착취  
▲정부보조금횡령 ▲생활인의 돈 갈취가 그것이다. 재활원과 요양원의 생활인들에

게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생긴 간식을 제공했으며 부실도시락 보다 더한 식사를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8일이나 지난 빵과 유통기한이 수개월이 지난 콜라캔을 간식으로 지급해 화난 직원들은 그 빵을 수거해서 휴지통에 버리거나 개에게 주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일상생활용품이 늘 부족해 여성생활인들은 생리대가 없어 대신 후원으로 들어온 아기 기저귀를 사용하기도 했고, 휴지가 없어 신문지로 뒤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업소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칫솔 등을 이용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설 근처에 있는 가축농장에서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개와 닭, 오리를 사육하는데 시설생활인을 동원했으며 신체가 건강한 정신장애인들을 동원해 몇 년씩 사육장 옆에서 숙식까지 시켜가며 가축을 사육하도록 하고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해야 했지만 그 노동의 대가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재단 운영진들의 수의사업으로 운영되어 그들의 호주머니만 채울 뿐이었다. 장애인들이 생활한 방에는 난방시설과 세면시설 조차 되어있지 않고 개 사육장 옆에서 지내며 인간이하의 대우를 받았다.

가축에게는 비싼 영양제 주사를 맞혔지만 시설생활인들은 개에게 물려도 치료한 번 받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재활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되어 있던 농장 관리인 장OO씨에게 구타와 학대를 당하며 인간으로서의 권리조차 찾을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했다

강제노역에 대한 고통은 계속 이어졌다. 폐쇄 조치된장애인들이 평균 15명이 일을 하였으며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일을 하였으나 임금으로 한 달에 오천원이나 만원을 받거나 아니면 담배 한 개비가 전부였다.

### 일가에 시설장 한 명만 있으면... 사돈에 팔촌 까지 직장 걱정 끝!!!

또 한 가지의 운영 비리를 본다면 청암재단의 정부보조금 횡령과 시설생활인들의 돈 칠취다.

비리 시설은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피복비나 간식비를 횡령하기 위해 가짜 구매 영수증으로 후원 들어온 식품이나 의류로 대치하고 구입한 물건에 대해서도 실제구입비 보다 영수금액을 부풀려 중간에서 착복을 하기도 하며 또한 건물 개보수에 시설장애인과 직원을 이용하고도 일부 이용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표1. 허위영수증조작 사례)

	실 제 구 입 액	영 수 증 처 리 금 액
사례 1) 피복비 횡령 (2004년 12월 8일)	10,000원×23켤레 = 230,000원	20,000원×40켤레 = 800,000원
사례 2) 부식비 횡령 (2004년 한해 기준)	90,669,100원	192,805,290원 (차액 102,136,190원)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데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이 친인척이다. 전 이사장의 아들 김OO씨와 사돈 손OO씨, 처의 친인척인 농장 관리인 장OO씨 등이 생활재활교사로 허위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것도 모자라 시설생활인 맹OO씨, 김OO씨, 김OO씨까지 직원으로 등재시켜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급여와 퇴직금까지 수령해 가기도 했다. 이것도 모자라 시설장애인들의 돈도 갈취하였다.

(표2. 생활인 돈 갈취 내용)

	돈 갈취 내용	비 고
김태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원 앞 대광지관에서 2000.8~2003.3까지 정식직원으로 일하게 하고 월 50~60만원가량의 임금을 원장이 모두 착복함.</li> <li>- 매년 상여금을 합하여 690만원을 쟁기고 생활인에게는 겨우 월 1만원을 용돈으로 주었다.</li> </ul>	2년 8개월치 장애인 임금 (2400만원착복)
박영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소당시 어머니가 물려주신 전세금(9백7십여만원)을 가지고 입소. 그러나 입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이 착복함.</li> <li>- 교사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전원장이 잘못을 시인하고 2005년 1월5일 다시 입금.</li> </ul>	2005년 1월 노조에서 문제제기하여 다시 찾아줌
서영O	- 개인 후원통장에서 2001년 357만원이 인출된 사실 확인하여 조사하니 원장이 불법으로 운영된 공장의 실값으로 사용함.	

## <청암재단의 문제점>

### 1. 견제·감시 시스템의 부재

1)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친·인척위주의 운영이다.

이것은 운영자의 독단과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감시체계나 견제할만한 세력이 없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다. 친·인척이 중요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들이 현장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맥이 없는 직원들은 그들의 비리를 보고도 모른 체 할 수 밖에 없다.

2) 또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주무관청의 관리소홀도 한 몫을 한다.

사회복지 시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과 복지정책의 허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시설의 경우 1년에 한번씩 감사를 받아야 하고 청암재단 역시 매년 감사를 받아 왔다.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며, 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열만큼의 비리가 저질러져야 공무원들은 확인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관련 공무원들은 한정된 인원 탓으로 원인을 돌리지만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려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공동감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의도 묵살시켜가면서 말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시민들의 세금이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관할구청인 동구청은 2004년 11월10일 정기 감사에서 청암재단 퇴직금 적립통장에서 1억3천만원이란 거액이 불법 인출되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였지만 확대 수사는커녕 불법으로 인출된 1억3천만이 2일뒤 11월 12일 (구)이사장의 처 장OO씨(チボ 육원 원장)로 부터 입금 된 사실을 확인 후 그 커다란 비리를 그냥 덮어두고 무마시켰다. 3억원 가량의 보조금이 이사장 친인척 중심의 유령직원 때문에 일어난 비리임에도 여전히 이사장은 무혐의 상태에 있다.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령직원은 관련구청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색출 가능한 비리인데도 동구청이 몰랐다고 하고 아직까지 미적거리는 속셈은 무엇일까?

그것은 오랜 유착관계 속에서 이미 그 비리의 정도가 너무나 커서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 2.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청암재단과 같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은 예산집행에 관해 불투명하다.

원장, 총무 선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얼만큼의 예산이 책정되고 얼마큼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예산집행에 일선의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간섭을 하였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저 사회복지시설은 돈이 없고 힘들다는 얘기로 모든 것들을 덮으려고 하고 있다.

가령 이번달에 부식비가 얼마가 집행되고, 간식비가 얼마가 집행되었으며, 피복비는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더라면 의문은 의문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 3.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역할 혼돈

이번사태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신들이 현장에서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혼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돼!! 시끄러운데 참견하기 싫어”

“우리가 뭘 하겠어... 그냥 묵묵히 일하고 월급이나 받아 가면 돼지”

“노조원들은 지금까지 뭐 잘 했다고? 원장이나 노조나 둘 다 똑같아!!”

“노조할 시간 있거든 장애인이나 한번더 셋겨줘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사랑, 희생, 봉사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다. 그러한 이데올로기 속에 묵묵히 일하는 기계로 전락해 운영자들에 의해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

고 짓밟히고 있음에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권리도 주장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대변해주고 찾아줄 수 있겠는가?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의 역할은 비단 장애인들을 셧기고 닦이고 하는 일만이 아닌 시설생활인들을 대신해 눈과 귀, 입이 되어 그들의 권리 지켜주고 되찾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권리를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지켜주고, 찾아주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 4. 시민들의 관심부족

사회복지시설은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럼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할 필요가 있다.

불법운영이 의심이가는 시설을 보고도 대다수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힘들게 사회복지 하시는데... 도와드리지는 못해도 어떻게 간섭을 하겠는가?” 시설에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은 시설 운영자들이 부를 축적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 시설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것이다. 시설 또한 시설장이나 이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며 시설장애인들의 것이요 시민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관심가지고 참견 할 필요가 있다.

### <청암재단투쟁의 현안 및 앞으로의 투쟁 방향성>

#### 1. 현이사진퇴진과 민주이사파견

청암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엄청난 비리, 인권유린을 자행했지만 막을 길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도 감독해야 할 관할 관청은 인터넷에 제보가 올라오기 전에는 비리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하고 문제가 발단된 후에도 진상조사에 들어가기 보다는 즉각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비리재단에서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도록 시간을 벌어 주었고 새 이사진을 승인해주기 까지 했다. 이것은 관할관청이 수십 년간 비리를 저지른 재단 비리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니라 비리의 고리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아직도 청암재단은 파렴치한 구재단이 물러나면서 선임한 현이사진들이 자리를 꾹꾹이 지키고 있다. 청암노조와 시민단체, 장애인들은 비리이사진들이 선임한 현이사진들의 퇴진과 민주이사 파견을 위해 계속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가 외치는 것은 단 한 가지 “장애인도 인간으로써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좀 자유롭고 행복해보자” 하는 것이다. 몇몇 운영자들의 마인드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민주 이사로 구성을 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 2. 불법운영자처벌 및 재발방지시스템 도입

각종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전원장은 실형2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를 해둔 상황이다. 그리고 비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은 무혐의 처리가 되어 벼짓이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저질러지고 세상에 공개되어도 그 당시에만 잠깐 시끄러울 뿐 여론이 잠잠해지고 기억에서 멀어져 갈 때쯤 다시 불법운영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위반해도 어쩔 수 없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람은 사회복지자격증 박탈과 다시는 사회복지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해야 할 것이다.

공공법인을 개인들의 손에 맡겨둔 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사회의 고유한 권한이다”는 무책임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입을 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강화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사회복지노동자로서의 인정 및 지역의 사회복지종사자노동조합결성 후원

아직까지도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은 비리가 터진 후에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가 일어나기 전에 운영자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세력으로 또한 당당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존재하도록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 및 예비사회복지사들의 교육과 다양한 접촉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의 노동조합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암재단 노동조합은 장애인들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귀가되어 그들의 인권을 대변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노력할 것이다. 자신의 권리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권리도 찾아 줄 수 없는 법이다.

“세상을 바꾸는건 오직 한사람의 힘입니다. 그 한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 투쟁소감

최진영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립회관 시설 민주화를 위한 농성 투쟁 231일을 보낸 나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다. 왜 이토록 이 투쟁에 열심히 결합했었는지를. 자기 몸을 차가운 시멘트바닥, 푸석 푸석한 스티로폼 위에 의지해 잠을 자고, 자기 살을 짓이겨 가며. 우리가 왜 이 투쟁에 열심히 해야 했었는지를, 시설민주화, 관장 연임이, 우리 중증장애인 이용자에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일까라고.

그러나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이용시설로써 30년 전통을 가졌고,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자립생활이념을 전파 시켰다.  
파연.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의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아직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정립회관은 최초로 전파 시키고 그걸 가능케 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을 전파 시키고, 장애인 인권과 권리보장을 심어주었던 정립회관.

그러나 정립회관 또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었다.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었다.

내가 올바른 생각으로 시설민주화를 부르짖고 있을 때, 관장 연임 반대, 장기 집권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부터 내게 활동보조서비스 중단을 시켰고 알게 모르게 압력이 들어왔다.

정립회관은 그동안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면서 자립생활이념은 사회변혁이라 했다. 특히 지하철 선로까지 내려가 전경들과 싸울 때, 중증장애인들을 영웅처럼 만들면서도 활동보조인이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즉 이 말은, 비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중증장애인은 생각도 의식도 하지 못하다는 전근대적이고도 구시대적인 발상이 내포해 있었다.

어느 복지기관보다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념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정립회관의 시스템에 맞는 이용자만 골라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일이 많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정립회관은 활동보조인을 지원하면서 중증장애인의 사생활을 보장하지 않았고, 일일이 보고하는 형태가 되어 이용자의 숨을 막하게 하였다. 또한 활동보조인이 그 역할과 이용자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질 좋은 서비스는커녕 일일이 이용자가 활동보조인에게 양해를 구하게 만들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과 같이 활동하는 것은,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를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편하게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이념을 최초로 전파했다고 자부하던 정립회관은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거동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오라는 식의 상식이하의 막말을 일삼았었다. 도대체 자립생활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재활훈련을 하라는 건지 정립회관의 정체성을 묻고 싶었다.

자립생활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기반으로 그걸 충분히 활용해 자신을 역량강화시키고 지역사회를 개선시키며, 그와 동시에 사회변혁을 꾀하는 것이라고 교육 받아 왔었다.

정립회관의 자립생활은 소위 정규교육을 못 받고 언어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에겐, 재활훈련을 시키고, 정규교육도 받고, 언어장애가 없는 중증장애인에겐 자립생활홍보사절단으로 만들고 있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립생활이념을 도입했다고 자부했던 정립회관의 모습이었다.

정립회관을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에서는 관장 연임을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운영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공개채용으로 올바른 사회복지시설의 첫장을 열 수 있는 정립회관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농성을 하는 동안 이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다.

이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사회복지시설을 한량 덕망 쌓기 위해 쓰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났었다.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을 덕망 쌓기 위해 쓰이는 도구에 사용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정립회관 민주화투쟁 경과보고

##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 경과보고

2004. 1. 16 관장정년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정립회관이 되길 희망하는 대자보를 시작으로 관장정년이후 대안마련촉구에 대한 의사표명
2004. 2. 3 팀장회의에서 관장은 정년 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직원설문조사 실시
2. 13 ~ 2. 18 이사장, 이사, 운영위원회 면담 및 전화연락을 통해 관장정년 이후 대안촉구
2. 24 정립회관 운영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회의 전 노조간부들이 운영위원회에 관장연임에 관한 안전상정 첨부자료 제출
3. 8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개최  
회의장 입구에서 11명의 조합원 대안마련촉구를 위한 피켓팅
4. 2 조합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설문조사와 피켓팅에 대한)
4. 14 조합원 8명 (피켓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4. 16 징계결과 통보 조합원 3명 정직1개월, 나머지 8명 견책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들에게 조합원들이 편지쓰기 실시
4. 21 2명 조합원 정직 적용 (4.21-5.20) / 중식집회 실시  
매주 월~금 출근전 및 관장출근시까지 피켓시위 실시
4. 22 규정개정을 위한 직원회의 실시 / 노동조합대표 2명 참석  
사측의 개정안 (정년제를 없애고, 임기제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고 현관장 적용가능)  
노조측 요구 (임기제로 개정한다면 중임제에 현관장 적용제외)
4. 23 이사장 면담 실시 (현관장 적용 제외 및 중임제 안건전달)
4. 27 이사 면담
4. 28 보건복지부 전자민원 (시설장 연임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5. 11 보건복지부 전자민원 결과 통보 (운영규정개정은 불합리하다)
5. 12 중식집회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 공문
5. 17 조합원 경위서 제출 불용의 사유로 시발서 제출하라고 하는 사측의 통보받음
5. 19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개최

이사회의실 앞 노동조합 피켓시위

광진구장애인연합회 부회장, 조직부장 노동조합의 대자보 및 조합활동에 대해 시비.

광진구장애인연합회 조직부장은 노조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자신의 의족을 벗어 노동조합 지부장의 얼굴에 폭력 가함.

5. 21 지부장 정직 1개월 징계시작

장애인신문 인터넷판에 '관장의 장기집권' 관련 기사 실림

광진구장애인연합회 부회장, 조직부장이 조합원을 강금한 상태에서 폭력과 폭언을 행사.

6. 7 장애인인권단체(17개) 정립회관 민주적 관장선임에 대한 성명서 발표

6. 9 정립회관이용자모임(7개) 정립회관 장기집권 반대 성명서 발표

6. 10 '정립회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15개 단체) 출범  
이사장 면담 요청 (거부당함)

6. 11 공대위 성명서 발표 및 중식 피켓팅 진행

6. 14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지부 성명서 발표

6. 15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 사무실 앞 결의대회 진행

공대위 SBS서울방송 윤세영회장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 항의면담

6. 16 공대위 정립회관 운동장에서 투쟁결의대회 진행 (약 50여명 참여)

6. 17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이사회 개최  
현관장의 2년 연임 결정

6. 21 이사회 결정에 대한 정립지부 성명서 발표 '이사회 결정 철회', '부당징계 철회'

공대위 성명서 발표

'이사회결정 철회', 이용자·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는 '정발특위 구성'

6. 22 공대위 20여개 단체 점검농성 돌입

6. 23 정립지부 간부파업으로 점거농성 결합

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기자회견 실시

6. 24 정립지부 전면파업 돌입과 점거농성 결합

6. 28 사회복지시설 민주화를 위한 인권단체 기자회견

6. 29 사회복지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7. 1 지역선전전 실시 (아차산역)

7. 6 송영욱 이사장 항의방문 및 선전전 진행

노동부 동부노동사무소 항의방문

7. 7 이익섭 이사(연세대 교수) 항의방문(전화 및 자료 전송), 학교방문  
면담진행을 실패

학교앞 선전전 및 피켓팅 진행

7. 8 '이완수관장연임철회 및 민주운영쟁취' 투쟁결의대회 진행.
7. 9 김정희 이사 항의 방문
7. 12 공대위 사측대표 3인과 공식테이블 구성(사측-채종걸, 최용화, 이완수)  
노사 공식테이블 구성(관장, 사무국장)
7. 13 채종걸 이사 항의방문
7. 15 공공연맹 주최'현안문제 사업장, 장기투쟁 사업장, 정부부처 타격투쟁'집중집회.  
김재원 지부장 삽발식 진행
7. 16 윤세영이사 항의방문(면담실패), 비서실에 우리의 요구 전달하고 옴.
7. 19 최용화 이사 항의방문(면담실패), 유선으로 만나기로 약속.
7. 20 최용화 이사 면담
7. 21 10:15 관장-사회복지노동조합 위원장 1:1 교섭  
21:30 관장-사회복지노동조합위원장 1:1 교섭 최종결렬  
공대위의 최종요구안 사측의 거부로 결렬
7. 22 8:30 인사위원 체육관 상황실 접근 저지 투쟁  
9:20경 사측 폭력만행  
15:30 폭력만행 규탄집회 후 체육관 집입 1층 로비에서 집회 진행
7. 23 폭력만행 규탄, 민주운영쟁취를 위한 기자회견 및 투쟁결의대회
7. 25 관장 교회 선전전 시작
7. 26 관장 집앞 선전전 시작
7. 27 지부장, 사무국장 등 3인에 대한 징계해임 공고 발표(8월 27일부)
7. 28 조합원 징계결과 공고(1명 징계해임, 나머지 4명 정직 3개월)
7. 29 정립회관 폭력관장 퇴진, 시설민주화를 위한 결의대회 및 항의 서한 전달  
구청주재로 간담회 개최 예정 => 8월 3일 11시
7. 31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II.결의대회,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문화제
8. 3 광진구청 주재로 사측과 간담회 진행(광진구청 대강당 11시)  
양측 입장확인
8. 5 이완수관장 퇴진 결의대회
8. 8 이완수관장 교회 선전전. 광진주민 통일한마당 참가 선전전 및 발언
8. 9 이완수관장 집앞 출근선전전 진행
8. 10 체력단련실 회원 및 비조합원 폭력사태 유발.  
쇠빠루, 오함마, 쇠지팡이 등으로 양쪽 농성장 유리창 및 범인사무실 폭력 침탈  
조합 사무국장, 교선부장, 장애인동지 2명부상. 조합 사무국장 입원
8. 11 곰두리 봉사회 180여명 폭력침탈.

- 김밥 배달 아주머니 폭행. 공공연맹 4명, 기자 등을 집단 구타.
- 8. 12 폭력만행 규탄 결의대회
  - 8. 14 노동자 통일선봉대와 함께 하는 이완수 퇴진 결의대회
  - 8. 15 노동자 통일한마당 참가
  - 8. 17 '장애인증연대현장활동단' 30여명 결합. 농성장 사수
  - 8. 19 장활단 주최 '이완수 퇴진 결의대회'진행
  - 8. 22 교회앞 선전전
  - 8. 23 관장 집앞 출근 선전전
  - 8. 24 이사장 집앞 출근 선전전
  - 8. 26 연맹주최 '폭력만행 규탄/부당징계 철회/이완수관장 퇴진 결의대회'
  - 8. 26 구청장 주재 면담진행
  - 8. 27 구청앞 1인 시위 진행
  - 8. 31 이사장 집앞 집회  
대구지하철노조 방문 결의대회 진행
  - 9. 1 성균관대 1인시위 - 정립회관 김동호사무국장의 반자립적 행위 알림
  - 9. 2 윤세영 이사 sbs앞 집회  
'폭력만행/파행운영/수수방관/책임회피'  
무책임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규탄 결의대회  
김재원 지부장 강제연행
  - 9. 3 이완수, 김동호사무국장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 심재옥의원 면담
  - 9. 4 김재원 지부장 석방
  - 9. 8 새벽 2시 50분경 용역깡패 20-30명, 곰두리봉사회와 광진구장애인연합회 15여명 농성장 침탈.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남성조합원에게 웃옷을 벗기고, 폭행을 가함.  
오전 7시 재탈환
  - 9. 9 폭력만행 규탄 기자회견
  - 9. 10 용역깡패 새벽 침탈 목격자 나타남. 목격자 진술받음.  
곰두리봉사회에 오전 아침식사 제공한 근거자료 확보
  - 9. 14 용역깡패 동원 책임자 구속수사 촉구 관련 기자회견  
목격자 진술 및 식사제공 증빙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보냄
  - 9. 15 차별철폐걷기 대행진 -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대위 시설민주화 부분 선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항의 면담 공문 발송
  - 9. 20 이사대표와 1차 협상진행-최용화, 채종걸, 김종석
  - 9. 21 공대위 수정안 제출
  - 9. 22 2차 협상 - 의견 폭 줄이지 못함.
  - 9. 30 3차 협상 - 이사회 채종걸 1인 참석.

10. 8 투쟁승리 100일문화제-아차산역
10. 11 폭력만행가담 비조합원직원 공개사과요구 성명발표
10. 13 박경석 집행위원장 강제연행(동부경찰서)
10. 14 박경석 집행위원장 석방
10. 21 이사회 마지막협상. 기존 이사회 협상안보다 후퇴한 내용가지고 옴.
10. 25 폭력가담 비조합원 공개사과 요구 출근선전전 시작.
10. 26 올림픽파크텔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장애인 자조단체와의 협력적 피트너 쉽) 김동호  
강의에 대한 자립생활 기반, 중증장애인 폭력에 대한 사무국장의 책임 및 기만성 알림  
송영욱이사장 '재활 50년, 도약의 50년 한국장애인 복지 50년 기념식' 시상식 항의. 인권유린, 책임회피하는 송영욱 이사장 공로패 수상에 항의.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질의시도 하였으나 주최측에 의해 전달 하지 못함.
10. 28 폭력만행/수수방관/파행운영/책임회피  
한국소아마비협회 송영욱 이사장 규탄 투쟁선포식  
공동대표 및 선봉대동지 삭발식 (이희범위원장, 이원교대표, 이광섭 동지)
10. 29 송영욱 이사장 집앞 집회 진행. 항의서 전달.
11. 4 송영욱 이사장 모친상으로 한 주간 이사장 타격투쟁을 현장투쟁으로 진행
11. 7 전국현장활동가대회 참가 (박현, 최강민)
11. 9 총무팀장 김경동의 폭력만행 선전활동-연세대학교
11. 10 노무담당 전경철의 폭력방조 선전활동-성균관대학교
11. 13 투쟁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 진행(전국노동자대회)
11. 16 송영욱 이사장 집앞 항의 집회
11. 18-22 이사장 출근 집회 및 이사장 규탄 집중집회  
일본원정투쟁-쓰야마 훨체어마라톤대회
11. 25 정립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원교, 한진구, 최진영, 김재원, 윤지영 (장애인3명, 조합2명 총5명)
12. 9 최종 이익섭 이사 면담후 단식농성 해지
12. 23 '정립회관 불법점거 대책 및 발전위원회' 현판식 저지 투쟁
12. 30 이사회에서 공대위와의 합의 거부. 김정희 이사장 권한대행에게 사태해결 위임.  
중증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소리' 모임 시작

2005년

1. 6 '무책임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규탄 및 대정부 투쟁선언 기자

회견' 광화문에서

진행. 서울시청 면담요청서 전달.

1. 10 서울시와 광진구청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진행.  
지방노동위원회 심의 참석(김재원, 정동은, 조현민, 전경숙). 심판일  
연기
1. 13 2차 '무책임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규탄 및 대정부 투쟁선언  
기자회견' 광화문  
진행. 서울시청 항의방문.
1. 14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중재 나옴.
1. 20 광진구청 중재안 송부
1. 26 구청 중재안 이완수 거부함.
1. 28 조속한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진행.(광진구청앞)
2. 5 최종합의서 작성. 합의사인 함.
2. 7 점거농성 해제
2. 20 정립회관 민주화투 승리문화제
2. 21 조합원 징계 시작  
공대위-조합원 징계관련 회관 및 구청 면담 요청 공문 발송
3. 18 노동조합 1차 현장 선전전 진행
3. 26 전국장애인대회 참가
3. 31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개최(후임 관장에 대해서는 깊게 논의되  
지 못함.)
4. 13 노동조합 2차 현장 선전전 진행
4. 18 노동조합 3차 현장 선전전 진행
4. 20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출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집회 참가
4. 21 조합원 4명 복귀 (정직2개월)
5. 9 정립회관장 공개채용에 관한 면담 요청 공문 발송(한국소아마비협  
회, 광진구청)
5. 12 김정희 이사장 권한대행 및 광진구청 담당자 통화
5. 19 정립회관 민주적운영 및 관장 공개채용 촉구 기자회견
5. 21 조합원 3명 복귀 (정직3개월)
6. 1 최용화이사 공대위 집행위원장과 면담
6. 3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개최
6. 7 '이완수관장을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결정'한 사항 통보받음
6. 9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구조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토론문

#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투쟁과 장애인운동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박경석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1987년의 투쟁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이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후 '위로부터의 혁명(혹은 그 이데올로기)'에 좌절되거나 굴절되어왔지만, 이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역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 문제를 둘러싼 지형을 크게 바꿔놓았음을 분명하다. 그러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영역은 여전히 온갖 인권유린과 비리 투성이의 전근대적 야만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인권의 사각지대' 운운하며 소개되고 있는 미신고시설 등은 그 극단적 표현 형태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도경제성장의 신화 속에 장애인은 가족이나 시설 등에 맡겨져 '사회적 부재(不在)'의 상태로 격리·배제되고, 오직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서만 존재하길 강요받아왔던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라는 과제는 자신을 둘러싼 구체적 환경을 바꾸는 개별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구조에 직면하고 폭로하는 전체적 투쟁과정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교육권, 문화접근권, 노동권 등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발전한 나라들의 역사들도 저절로 생겨나거나 주어진 것은 아니다. 1960년대 말 스웨덴에서의 시설(반대)투쟁, 70년대 초 일본에서의 시설(인권)투쟁은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켰고, 가족과 시설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립생활운동'으로 발전하는 직접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시설'을 둘러싼 투쟁과정과 그 성과들로 장애인의 삶의 물질적 조건들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재활(再活)에서 공생(共生)으로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요구했던 것을 생각하면, 시설민주화 투쟁에 보다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시설민주화는 사회일반의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의 장애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현실적 투쟁의 과제이며, 필연적이라는 것도 다른 나라의 역사와 다른 사회운동 영역들의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은 본래 사회공공의 영역이며 실제 사회의 공공자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적 소유의 형태로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감시감독의 역할마저 포기한 채 민간위탁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온갖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을 방관하고 있다.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낸 표현형태들이 바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하고 피부로 접하는 현실인 것이다.

여기서 사적소유의 문제는 사회복지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라는 결정기구와 시설장이 폐쇄적으로 구성되고 선출되는 구조의 문제로 시설비리의 근원이 되며, 비민주적 운영의 문제는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과 선택이 배제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이다. 비리 등은 이런 구조를 토대로 친인척에 의한 시설운영의 전횡, 비합리적인 인사, 이중장부 작성을 통한 착복 등 다양하게 벌어지는 문제들이며, 인권유린 또한 마찬가지 토대와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해당기관의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설법인과 해당 관청의 유착상태가 심하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설운영 비리가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에 의해 개선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복지 기관에서의 시설비리 투쟁의 대표적인 예인 애바다 투쟁은 시설비리로 유착되어 있는 시설법인과 해당관청의 유착의 고리를 끊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여 근본적 문제를 야기한 국가가 스스로 사회복지현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며,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는 바이다. 또한 지금의 많은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시설민주화와 시설비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 자체가 개혁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혁의 주체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사적소유를 끊고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익이사제, 판선이사제 등을 도입하고 열린 의사결정기구와 이용자와 노동자가 참여하는 운영구조를 만들고,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엄밀히 말해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특히 장애인수용시설 등에서 나타난 비리와 인권유린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수용시설이 아니라 일정정도 개방된 이용시설이기에 상대적으로 감시와 통제가 있어왔다는 점과, 90년대 초반 이미 비리문제로 2차례의 점거농성을 겪은 역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의 도화선은 정년을 넘긴 관장연임문제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년을 넘긴 것에 대해 사측은 그래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정립회관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정립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장기집권을 감행하여 사적소유 경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또, 가시적으로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측의 ‘도덕성’ 주장에 대해 사적소유구조 자체가 비리와 같은 문제들의 객관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더욱 열악한 시설들도 많은데 왜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문제삼느냐는 사측과 주변 일부의 논리에 대해, 시설문제의 구조적 동질성과 현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진 주체들의 투쟁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성으로 맞서야 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조합에 동원되었다느니 하는 파렴치한 비방과 천인공노할 폭력만행을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과정 속에서 주요한 시사점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주목을 요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이용자 혹은 장애운동과의 관계이다. 정립회관 뿐만 아니라 한시련, 청암, 성람 등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은 결성 배경부터 시설의 비리 혹은 비민주적 구조에 직접 기인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는 사적소유구조와 비민주적 운영구조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노동조합 불인정이나 노동탄압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적소유구조와 비민주적운영구조의 필요조건인 것이다. ‘사회복지노동자’는 올바른 ‘사회복지’와 올바른 ‘노동자’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동정과 시혜’의 다른 이름인 ‘사랑과 봉사’ 이데올로기를 깨고 당당한 사회복지노동을 주장하고 노동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비민주적 구조에 맞서야 한다.

정립회관을 비롯한 최근의 투쟁은 그 연결지점과 가능성, 어쩌면 경향성까지도 보여줬다 하겠다.

끝으로, 진보적 연대운동과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한 부분이다. 즉, 바로 위에 거론한 노동자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민주화투쟁의 주체에 대한 문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립공대위>는 이용자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단체 3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역시 21개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공동투쟁체로 묶이는 데는 매우 단순한 조건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에 대해 같은 인식을 할 것과 민주화 투쟁을 함께 결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립회관 투쟁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논리를 발견하였다. 사측 혹은 사측에 앞장서서 <정립공대위>를 탄압한 측, 심지어 폭력만행을 자행한 <곰두리봉사회>까지도 자신들이 장애인이며, 노동조합이나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다 자신들이 같은 장애인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진다고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같은 장애인끼리 싸우지말자”는 말과 함께 “불쌍한 중증장애인의 노조의 사주를 받았다”고 말하여 장애인의 의사결정의 능력까지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지만, 장애인들의 열악한 삶의 조건과 사회에 만연한 억압의 기재들은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강하고 우선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그로인해 장애인운동에서 이와 같은 배타적 ‘당사자주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논리가 문제의 본질과 투쟁의 전선을 교란시킬 우려도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장애대중의 고통과는 전혀 다른 권력기반 위에서 관변화되고 있는 ‘장애운동’의 모습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대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진보적 장애운동의 연대가 현실적으로 요구되며, 그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민주화’가 자리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토론문)

##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방향

이민종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민주노동당)

### 1.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시설장 및 이사회 경우는 이를 자신의 사적재산으로 인식
- 이사회로 집중된 독점적 권한, 친인척에 의한 족벌 운영, 이로 인해 파생되는 폐쇄성 및 지역사회간의 고리.
- 특히,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경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주체적으로 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음.

### 2.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법

-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에 관련되어 규정되어 있음. 이 외 함께 그 대상 및 종류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3. 기존 법안의 문제점

-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 시설 및 법인의 설치 및 운영 형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상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사회복지 분야가 지방이양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이 전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어지게 됨. 현재까지도 사회복지시설장 및 이사회의 경우, 지방토호세력이면서 지방정부와 결탁해 각종 비리를 양산하는 구조였음. 이에 대한 대안없이 무리하게 지방이양되면서 오히려 더욱 사회복지

시설내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음.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추진했으나, 시설장을 비롯한 관련 기득권자들의 압력에 밀려 소폭 개정하는 수준으로 그침.

#### 4. 민주노동당의 입장

-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는 중에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차적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4.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에 관한 법 개정 방향

◆ 당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임(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아님)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시설의 공공적 성격을 분명히 명시해야 함.
- 이사회로 집중된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로 진행: 지역사회, 시설이용자, 시설노동자가 함께 운영 구조에 참여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함.
- 이사회의 임원, 시설장 등에 대한 자격요건 · 의무 등에 대한 기준 강화: 친인척에 의한 족벌운영 금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자 금지, 비리를 행한 자가 또다시 다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제한 기한을 늘리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등) 등
- 시설 및 법인 운영의 투명성 강화: 회의록 및 예산 집행 등 공개, 기타 운영 문제 등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원칙을 만들
- 이용자들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안 제시
- 기타 다양한 대안 모색

#### 5. 참고사항: 사립학교법

-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것임(별첨).

- 사립학교의 경우도 이사회의 독점적 권한 및 폐쇄적 운영,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비리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민주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낸 것임.
-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투쟁(기득권 반발에 대한 전술, 관련 단체들간의 의사조율 등)은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투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별첨자료)

##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안]

- ▷ 사립학교 소유개념 문제 → 공공성 강화
-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 관한 요건의 문제 → 설립 및 설립자의 요건 강화
- ▷ 사립학교 운영구조의 비민주성 → 권한의 분산 및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 ▷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 ①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목적과 성격에 대하여 공공성보다는 사적 소유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 사학설립(경영)자의 전횡적인 경영으로 인한 부패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 사립학교도 당연히 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다. 사학 윤리 강령에서도 “사학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은 국가사회에 바쳐진 공공재산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유물같이 다루어져서는 안된다”라 하고 있다. 윤리 강령의 차원이 아니라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② 설립 및 경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 교육부가 사립학교 설립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설립을 허가하고, 그 준칙조차도 계속 완화한 결과 사학설립이 일반회사 설립과 다름없게 되어 있다. 그 결과 학교건물과 땅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도 없는 학교법인이 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세 사학이 교육의 질 하락과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고 그 요건의 강화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사립학교는 더 이상 치부의 수단이 될 수 없다.

#### <사립학교 설립 및 설립, 경영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 전과자, 교육법 위반자, 파렴치한, 도덕적 문제가 있는 자 또는 치부목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자들이 학교를 설립하거나 총/학장, 이사/감사 등으로 학교경영에 참가하는 것 금지함
- 1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고 비교육적이고, 상행위적, 불법적 학교 경영 금지
- 학교경영을 위한 기본재산도 없으면서 학교를 설립한 후 설립조건을 이행하자 않거나, 재단 전입금도 납입하지 않음은 물론 오히려 학교비를 유용, 횡령하는 것 방지
- 이사와 감사 등에 대한 자격조건,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형식적 기관화 방지
- 무상 증여를 빙자한 학교의 불법 매매 금지
- 폐교학교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 ③ 민주적 학교경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 현재의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관계법에는 학교경영권이 이사장(설립자) 일인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으나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학교 내의 견제·감시 장치를 통한 내부 통제력 강화, 학교의 민주적 경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부모, 교직원, 학생, 법인 등 학교 교육의 각 주체가 경영권을 분산 공유함으로 일인의 전횡을 막을 수 있으며, 각 주체가 학교 운영에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때 학교발전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 학부모, 교직원, 학생 단체의 법적 기구화
- 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취약하여 이사장의 전횡을 방지하기보다는 전횡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거수기로 전락 → 구성과 기능의 강화
- 학교법인의 학사업무 개입 금지 강화
- 사립중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기구화

### ④ 학교 재정의 투명한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학교의 제반 견제·감시 장치가 없거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사업무와 재정업무를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부패 사학'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 교육의 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좌우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바꿔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이 이렇게 바뀌면 학교의 예산은 전적으로 학교 교육을 위해 쓰여질 수 있다.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원하는 교육을 하기 위한 재원이 쉽게 확보될 수 있다.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분리하여 학교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집행
- 사립학교 재정의 비투명성 → 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예결산과정 참여
-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를 불법 운영할 경우 처벌 기준 강화
- 재단의 최소 전입금 납입 의무화 및 재단 전입금의 내용보고, 공시를 의무화
- 교육부교육청에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사학재정평가위원회 구성

## [사립학교 개혁을 법 개정 과제]

###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주요 법개정 과제

1. 공익이사제 도입 - 이사정수의 1/3 이상을 학교구성원이 추천
2.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 -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1/5로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및 임원 취임 금지 조항
  - 임원취임 승인 취소 요건의 구체화와 교육목적 달성을 근거한 요건의 확대
  - 부패 임원과 학교 장의 복귀 금지기간 강화 -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 임시이사 선임 조항 개선 - 관할청이 즉시 직권으로 선임하며, 임시이사 임기 제한 조항 삭제.
4.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한 기구 설치 조항
  - 국·공립학교와 차별없는 학교운영위원회 - 심의기구화
  - 민주적 학교운영구조 완성 -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교수회의 법정 기구화
  - 감사 선임 - 학교구성원이 추천
  - 법인 회계와 학교 회계의 심의과정 분리 - 학교 회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5.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와 투명성 확보 조항
  - 학교의장을 제외한 교원 임면권 공영제 실시 -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교원인사 대상자중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학교의장이 임명
  -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원으로 구성하고, 재징계 조항 폐지
  -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질문지>**

질문 내용을 이곳에 적어 안내하는 분께 전해 주세요!